<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u> <u>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u> <u>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 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주식회사 씨엘케이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1330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1.10.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5.06.12]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6호(청담동, 정화빌딩)

가맹사업부 Tel: 1688-5938 Fax: 02-499-2045 E-mail: chulimlt1019@gmail.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5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9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별첨4] 별지 제4호 서식: 2022년~2024년 재무재표증명원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씨엘케이 에프앤비	춘리마라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6호(청담동, 정화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년8월22일		2022년9월1일	강연	1688-5938		02-499-2045	
	법인등록번호	1	10111-8402218	사업자등록번호		122-86-4888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씨엘케이 에프앤비	춘리마라탕	2022.10.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1길 20, 102동 90호	강연외 1명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춘리마라탕]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춘리마라탕	마라탕, 마라샹궈 전문점
상 호	춘리마라탕 OO점	-
상표(서비스표)	CHUN·Li MALATANG	등록번호 제40-1683075-0000호 제40-1683076-0000호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22	333,817	190,134	143,683	1,103,629	47,743	43,682
2023	2,550,156	1,250,865	1,299,291	6,227,781	1,423,896	1,155,608
2024	6,245,706	2,159,180	4,086,525	11,418,856	3,465,615	2,787,23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직영점 매출액과 손익계산서상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이름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구분 이름	이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강연 대표이사	레드시기	2021년10월14일 ~ 2022년8월31일	씨엘케이에프앤비 공동대표	가맹사업		
		네쵸이사 	2022년9월1일 ~ 현재	주식회사씨엘케이에프앤비 대표이사	총괄		

가맹사업	7ŀ여	2J. 1]	2022년8월22일	주식회사씨엘케이에프앤비	가맹본부
관련임원	/ 상영	삼사	~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직원구(8)	
2024년 12월 31일	1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춘리 (상표권)		2019.12.20출원 2020.07.22등록	출원 4020190198424 등록 4016273700000	최경성	2030.07.22
춘리 (상표권)		2019.12.20.출원 2020.07.22.등록	출원 4020190198469 등록 4016273710000	최경성	2030.07.22
춘리 (상표권)		2019.12.20.출원 2021.01.15.등록	출원 4020190198484 등록 4016830750000	최경성	2031.01.15
춘리 (상표권)		2019.12.20.출원 2021.01.15.등록	출원 4020190198478 등록 4016830760000	최경성	2031.01.15

※ 지식재산권의 관한 사항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춘리마라탕] 가맹사업 현황

1. [춘리마라탕]를 시작한 날 : 2018년 02월 01일

2. 【춘리마라탕】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씨엘케이 에프앤비	춘리마라탕	강연	2021년10월14일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6호(청담동, 정화빌딩)

3.【춘리마라탕】업종

영업표지	업종			
춘리마라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마라탕, 마라샹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춘리마라탕]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4.12.31.				2023.12.31	•	2022.12.31.			
시탁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03	202	1	181	180	1	129	128	1	
서울	59	58	1	50	49	1	35	34	1	
부산	20	20	-	19	19	-	14	14	-	
대구	6	6	-	6	6	-	3	3	-	
인천	13	13	-	10	10	-	7	7	-	
광주	4	4	-	2	2	-	2	2	-	
대전	12	12	-	11	11	-	9	9	-	
울산	7	7	-	7	7	-	6	6	-	
세종	3	3	-	3	3	-	3	3	-	
경기	36	36	-	32	32	-	26	26	-	
강원	6	6	-	6	6	-	4	4	-	
충북	12	12	-	11	11	-	6	6	-	
충남	4	4	-	5	5	-	3	3	-	
전북	4	4	-	3	3	-	2	2	-	
전남	-	-	-	-	-	-	-	-	-	
경북	5	5	-	4	4	-	2	2	-	
경남	8	8	-	8	8	-	5	5	-	
제주	4	4	-	4	4	-	2	2	-	

5. 바로 전 3년간 [춘리마라탕]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47	85	-	4	-	128
2023	128	53	1	-	8	180
2024	180	30	6	2	12	202

6. [춘리마라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춘리마라탕**】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	24년 평균 매	출액(단위: 천	[원]		
지역	2024년 가맹점수		연간평균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71607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 한	면적 3.3㎡당	하 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02	697,603	27,275	2,184,877	132,347	142,707	4,957	
서울	58	962,525	42,440	2,184,877	132,347	147,497	11,320	
부산	20	561,768	20,760	950,103	57,076	264,921	7,576	
대구	6	676,800	24,102	951,886	39,221	378,754	8,223	
인천	13	537,499	21,679	799,516	39,980	320,488	11,423	
광주	4	-	-	-	-	-	-	5곳미만
대전	12	661,625	19,463	953,902	32,645	338,624	10,480	
울산	7	554,575	21,070	805,528	42,307	203,310	8,401	
세종	3	-	-	-	-	-	-	5곳미만
경기	36	682,618	26,426	1,635,321	111,631	142,707	4,957	
강원	6	494,147	23,981	678,876	42,388	178,205	10,501	
충북	12	593,017	23,604	1,319,414	43,980	162,374	10,355	
충남	4	-	1	-	-	1	-	5곳미만
전북	4	-	-	-	-	-	-	5곳미만
전남	-	-	-	-	-	-	-	5곳미만
경북	5	651,240	26,289	842,212	50,533	428,712	15,896	5곳미만
경남	8	343,353	10,895	656,260	26,092	191,520	5,165	
제주	4	-	-	-	-	-	-	5곳미만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신규개점이나 명의변경으로 2024년 영업기간 동안 6개월 미만으로 영업한 16곳의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u>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02개가 아닌 실제 186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u>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 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 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춘리마라탕】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춘리마라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4	202	784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u>당사에서 [2024년]에 【춘리마라탕】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u>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2]쪽을 참고하십시오.

78	۸ ۵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브	비고	
구분 수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끄
광고·판촉	-	(비공개)	3,347	3,347	-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 액만 기재하였고 그 근거는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u>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u>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기업과	각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1588-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u>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u>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춘리마라탕】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630	계약체결 후 - 2일 이내 예치	영업	영업 개시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3,630				후
총계	7,260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3,300	계약체결 후 2일 이내 예치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상액 등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630	부가세포함
교육비	3,630	부가세포함
보증금	3,300	-
합계	10,560	부가세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필수설비 (정착물)	필수설비 집기 및 비품 등 POS		24,700	1.235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테리어 내장공사)	당사	39.980	1.999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 외부 출입문 ŀ인 시공	또는 당사의 지정업	2,200 ~ 6,600	_	인테리어 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	공사 전 업체와 계약취소	
최초 공 [.]	급 상품 비용	체	7,000 ~ 9,000	_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점에 소요되는 비용		1,800 ~ 2,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총계		75,680~ 82,580	3,784~4,129	-	-	66 <i>m</i> ² (20평)기준

- ※ 매장의 크기,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시 가 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리비는 3.3㎡당 50만원이 책정되어 부가됩니다.(vat포함)
- -. 위 표의 금액은 기타비용(도시가스공사,전기증설,화장실공사,닥트공사,냉난방설비,수도시설,외부공사,가구공 사,상하수도 유입공사,소방설비,철거비용등)은 총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u>-.</u>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단, 영업표지(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간판, 사인, 디스플레이 등은 당사가 일괄 진행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 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 만19세 이상일 것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춘리마라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u>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u>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본부	50%(가맹본부): 50%(가맹점사업 자)	분담금 확정 후 2일이내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광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75%(가맹본부): 25%(가맹점사업 자)	분담금 확정 후 2일이내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브 랜드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 :0%(가맹점사업 자)	-	-	-	가 맹 점 모 집 광 고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분담금 확정 후 2일이내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로열티	가맹본부	2,000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	가맹계약서 제14조 참조	가맹계약서 제14조 참조	부가세별도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30	다음 월 10일	없음	소멸성비용	-
POS관리비	자율선택	-	매월 말	없음	없음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VII. 가맹본부 의 경영 및 영 업 활 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 사자의 귀책사 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 정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u>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u>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자체 공장에서, 마라탕 소스 등을 직접 제조 및 생산, 가맹사업자에 한하여 공급하는 관

계로, 차액가맹금 선정이 불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가맹사업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u>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u>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활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협 의				
ᅕᄁᆝᄀᄋᄞ	협의하여 결정	교육시작일 7	교육시작 1일 이		추가교육
추가 교육비	업의야연 결정	이전	전에 계약해지		필요시
저고 이저비	성이쉬어 보다	점포 이전 후	점포이전에 합의		점포이전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10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춘리마라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합니다. 다만,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이수 과정을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화을 청구함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u>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춘리마라탕"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기호도 사용</u>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위약벌을 부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지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 100,000원의 민사상 위약벌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u>있습니다.</u>							
⑤ 당사와 귀	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9	<u> 동시에 15</u>	5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	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춘리마라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춘리마라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 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 칭	관 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해당 사항 없음.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춘리마라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해당 사항 없음.

2) 당사가 【춘리마라탕】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 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해당 사항 없음.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마라탕	1회 위반: 구두 경고	
마라샹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춘리 꿔바로우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상품 공급의	-
춘리 볶음밥	제한 및 중단, 계약해지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만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상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재된 제품은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가맹점 이외의 유통채널 고객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	----------	----

마라탕(100g)	1,900		
마라샹궈(100g)	3,000 또는 3,300	호페이지에 고지 으서 패스	
꿔바로우	12,900 또는 16,900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 팩스	-
양저우볶음밥	6,900 또는 7,9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u>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u>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마라탕, 마라샹궈를 주 업으로 하는 업종	춘리마라탕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원칙) 점포소재지 반경 1km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예외) 1.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입점 2. 배달 영업이 아닌 홀 영업 목적의 입점.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동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점포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u>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u>

<u>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u>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u>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u>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u>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u>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해당 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 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해당 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53%	0.47%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춘리마라탕】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u>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에→B, 어디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 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한 경우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 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 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 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 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체 조달하여 용도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 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u>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u>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교육 진행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33조 2항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33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u>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u>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u>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u> <u>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또는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u>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 속인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 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	-	-
업무위탁	불가능	-	-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춘리마라탕】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u>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 <u>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u>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군디막다당 과 동익하 언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춘리마라탕**】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원칙) 오전 12시 ~ 오후 12시 (점포 여건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 객의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음)	주 6일 이상 월26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수 없습니다. 단, 법정 공휴일로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경우에는예외로 합니다.	

<u>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u>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u>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u>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u>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u> <u>다음과 같습니다.</u>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가맹사업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춘리마라탕】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과그 서건	부담비율		ᆸ다 저비	ul ¬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사전 동의 → 가맹점의 광고 참여 결정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모집+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75%	25% (가맹점 수로 균분)	사전 약정 (명칭, 실시기간, 분담비율, 분담한도)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판촉행사 ·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사전 동의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사전 약정 (명칭, 실시기간, 분담비율, 분담한도)	
	기타 개별행사		협의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 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 액 제시 → (가맹본 부) 자료제출일로부 터 10일 이내 부담 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u>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u>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0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7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18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이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30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으로 1일당 금 일십만 원을 더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제16조(감독 및 통제)를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원을 지급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u>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u>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D-47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D-46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및 계약	- 개설 승인 최종협의 및 계약 -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소요비용은 [11, 12]쪽을 참조하십시오.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컵셉 및 도면 - 투자비 산출		D-30~27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7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7~8	
소품	- 소도구 및 집기 투입	D-8~7	
신고 서류 접수	- 인허가 및 영업 등록, 소방	공사기간중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u>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u>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 <u>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u>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u>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u>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경우	○간판교체 비 용 ○인테리어 공 사비용(장비·집 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가 비계용 수 분이 내 보 다 가 비계용 수 분이 내 보 다 가 보 다 하 하 가 비계용 수 분이 보 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o 가 애 사	환선부년에본의없사로이료약해업도)는우본부액잔간비는액포개로 3 내맹 임 약 계 영 함 맹 기 하담점경일터이가부책는유계종(의지양포되경가부담중여에례부으

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익로	삼 지 남하지 나니하 네 미 급한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남하지 나니하 나 미 미 한 메 리 한 마 한 - 한 - 가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u>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u>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가맹사업팀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춘리마라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 메뉴 조리 - 마케팅 - 고객 응대 - 위생 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 친절 교유 - 마케팅교육 - 판매 촉진방안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춘리마라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9시간30분 (3일*6시간30분)	3,63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5시간	100(1인당)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7길 11-6, 1층(소공동)

<u>* 상기 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u>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2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13,71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토	ᅺ공가	서	내된	용 문의	일 >
---	----	-----	---	----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688-593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기	-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춘리마라탕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강 연	
	주소(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806호(청담동)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국민은행 446001-01-4523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6조의 5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7 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별첨 #2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수 령 하 였 음)
	※" <u>수령하였음</u>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7.09

별첨 #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한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지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는 경우, 가맹본
	·

별첨 #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기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는 경우, 가맹본

반 국민에는 공개되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다 서울특별시장

부에 정보공개서 원년	- MISE - G-11-1-1	718 171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반 국민에는 공개. 부에 정보공개서	되지 않습니다. ㅂ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